

「구미시 아동·여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년 1월 8일

나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: 2024년 1월 8일

라. 상정일자: 2024년 1월 17일

제2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문화체육관광국장 김 영 철

나. 제안이유

- 「아동·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사업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·운영하였으나 2019년부터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본 조례에 의한 아동·여성 안전지역연대의 존치이유를 상실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「구미시 아동·여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폐지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」, 「구미양성평등 기본 조례」, 「구미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」, 「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, 「구미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, 「구미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」
- 합 의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○ 본 폐지조례안은

- 타 자치법규에서의 중복규정 등으로 필요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상위법 제정, 위원회 기능 명문화 및 동일한 사항에 대한 다른 자치법규에서의 중복 규정으로 필요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.
- 집행기관에서는 여성·아동·범죄 등에 관해 각 사업별로 세분화하여 더욱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정책 및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 론 요 지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